

## 미군 공여구역 등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지원방식의 문제와 개선방안

작성 : 봉인식 / 도시지역계획연구부 책임연구원  
(pong@gri.kr 031-250-3128)

감수 : 이상규 / 충주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thankyu@cju.ac.kr 043-841-5419)

### 목 차

#### 요약

- I. 미군 공여구역 등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관련 현황
- II. 중앙정부 예산 지원방식의 문제점
- III. 중앙정부 예산 지원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 IV. 향후 추진방향

## 요 약

- 중앙정부는 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발전지원을 위해 10년간 1조 8,000억원(2009년도 2,171억원)의 국고지원을 계획함
- 경기도는 전체 반환공여지 면적의 9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예산은 전체의 54.7%만 배정됨
-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의 가중비율 조정과 다양한 피해정도를 고려하는 세 가지 대안을 검토함
  - 면적비율조정 : 공여구역과 주변지역 비율을 조정하면 최대 71.8%까지 경기도 지원비율 증가 가능
  - 군속 및 주민세 감소정도 고려 : 기존과 큰 차이 없음
  - 면적 및 군속 또는 주민세 감소 고려: 최대 62.7%까지 경기도 지원 비율 증가 가능
- 향후 경기도는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의 비중을 8:2로 차등하며 계속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 간에도 가중치(1:1.5)를 적용하는 개선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음
  - 면적기준에 대한 개선안은 방법론적으로 중앙정부 방식과 큰 차이가 없으며 법 취지에 보다 적합한 방식으로 기존보다 높은 경기도 배정비율 가능
- 또한 경기도 발전종합계획(안)에 대한 중앙정부(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의 적극적 추진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 1. 미군 공여구역 등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관련 현황

### 1. 중앙정부의 예산확보 현황

- 행정안전부는 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발전지원을 위해 1조 8,000억원 (10년)의 국고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도로공원 매입을 위해 별도 예산확보를 계획하고 있음
- 2009년도의 경우, 2,171억원의 국고지원을 계획함
  -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을 위해 전체 1,492억원의 예산지원을 계획하였으며 이 가운데 850억원(56.97%)<sup>1)</sup>을 경기도에 지원할 계획임
  - 도로공원 매입을 위해 679억원의 예산을 계획하였으며 이 가운데 340억원 (50.01%)<sup>2)</sup>을 경기도에 배정할 계획임

### 2. 시도별 사업비 배정기준

- 행정안전부는 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면적에 대해 각각 25%, 25%, 50%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결정된 비율에 따라 시도별 예산 배정을 계획함
  - 전체 예산의 54.7%가 경기도에 배정되며 강원도와 경상북도가 각각 13.2%, 11.5%의 예산배정 비율을 가짐
  -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가 가장 낮은 0.3%의 비율을 가짐

1) 1조 7,183억원(행안부 소관 발전종합계획사업 국고보조소요액) ÷ 9년 = 1,909억원

우선 투자대상으로 69건(1,492억원)을 계획하였으나 우선투자대상사업 세부 내역은 미작성

2) 1조 7,030억원(도로, 공원 매입소요)×73%(평균보조율)÷6년(분할상환)≒ 2,072억원

국방부와 협의 완료된 금액 (의정부 라과디아 340억원 포함)

<표 1> 행정안전부 사업비 배정비율

시도별	공여구역(25%)		반환구역(25%)		주변지역(50%)		가중치 합 계
	면적 (km <sup>2</sup> )	가중치	면적 (km <sup>2</sup> )	가중치	면적 (km <sup>2</sup> )	가중치	
전 국	40.52	0.25000	171.88	0.25000	11,152.42	0.50000	100.0%
경 기	17.05	0.10519	167.56	0.24372	4,423.47	0.19832	54.7%
부 산	0.48	0.00296	0.53	0.00077	56.84	0.00255	0.6%
대 구	3.32	0.02048	0.85	0.00124	489.48	0.02195	4.4%
인 천	0.04	0.00025	0.48	0.00070	42.97	0.00193	0.3%
광 주	1.22	0.00753	-	-	1.35	0.00006	0.8%
대 전	0.13	0.00080	-	-	86.45	0.00388	0.5%
강 원	-	-	2.38	0.00346	2,864.54	0.12843	13.2%
충 북	0.02	0.00012	-	-	74.22	0.00333	0.3%
충 남	0.04	0.00025	-	-	290.45	0.01302	1.3%
전 북	10.38	0.06404	-	-	111.97	0.00502	6.9%
경 북	3.07	0.01894	0.02	0.00003	2,152.37	0.09650	11.5%
경 남	4.77	0.02943	0.01	0.00001	595.04	0.02668	5.6%
제 주	-	-	0.05	0.00007	263.27	0.01180	1.2%

자료: 행정안전부, 경기도 내부자료

## II. 중앙정부 예산 지원방식의 문제점

- 현재 제시된 중앙정부의 예산배정기준은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근거 없이 단순히 공여구역(반환구역 포함)과 주변 지역을 50:50으로 나누고 있음
  - 전체 반환공여지 면적의 97.5%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전체 예산의 54.7%만 배정함
  - 공여구역은 없으며 반환공여구역이 전체의 1.4%에 불과한 강원도의 경우, 11.5%의 비율이 산정됨
- 또한 미군 공여에 따른 각 시도의 피해정도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기준 제시가 미흡함

- 지원특별법은 미군 공여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는 바, 이에 부합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III. 중앙정부 예산 지원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 1. 개선방향

- 법 제정의 취지를 감안하면 미군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긍정적 차별화 : 공여구역(반환구역 포함)에 보다 높은 가중치 부여
- 계속공여구역보다 반환공여구역에 높은 가중치 부여
- 배정기준은 면적뿐 아니라 미군공여에 대한 지역의 피해정도를 감안할 수 있는 군속 등 종사자나 이들에 의한 지방세 감소율 등도 고려

#### 2. 개선방안

- 개선방향에 따라 세 가지 대안 제시 가능
  - 1안 : 면적비율 조정에 의한 방안
  - 2안 : 군속 또는 주민세 감소비율에 의한 방안
  - 3안 : 면적과 군속비율 또는 주민세비율을 고려한 방안

□ 1안 : 면적비율조정

○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가중치 차등화

- 공여구역에 대한 가중치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킴
- 미군에 의해 계속 공여되는 구역과 반환되는 공여구역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반환공여구역에 대해 1.5배 가중치 부여)하거나 동일한 비중 적용
- 아래 표와 같이 가중치에 대한 8가지 대안 도출 가능

<표 2> 가중치 변화에 따른 대안

대안	공여구역				계	주변지역	합계
	A		B				
	계속공여	반환구역	계속 공여	반환구역			
a	25	25	20	30	50	50	100
b	30	30	24	36	60	40	100
c	35	35	28	42	70	30	100
d	40	40	32	48	80	20	100
e	45	45	36	54	90	10	100

○ 각 대안별 배정비율

- 반환구역비율이 높을수록 다른 비율이 낮을수록 경기도의 배정비율은 높아짐
- 주변지역 비율을 10%로 낮추면 최대 71.8%까지 경기도 배정비율을 높일 수 있음

<표 3> 면적기준 개선안에 따른 경기도 배정비율(%)

대안	a		b		c		d		e	
	A	B	A	B	A	B	A	B	A	B
경기	54.7	57.5	57.7	61.1	60.7	64.6	63.8	68.2	66.8	71.8

□ 2안 : 지방세 등 감소비중 고려

- 미군 공여구역을 포함하는 시군의 지방세 감소비중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전체 감소액의 53.7%를 차지하는 반면 전북의 감소 비중은 없음
- 군속 등 미군관련 종사자의 경우, 경기도가 전체 감소인원의 52.5%를 차지하며 광주, 경남 등은 1% 미만의 비중을 차지함

<표 4> 지방세 및 군속인원에 따른 시도별 비율

시도	지방세 (%)	군속 (%)
경기	52.5	53.7
부산	2.2	6.5
대구	15.5	13.9
인천	0.5	1.7
광주	0.1	0.1
대전	0.0	0.0
강원	4.3	19.9
충북	0.0	0.0
충남	0.0	0.0
전북	18.6	0.0
경북	5.8	0.0
경남	0.2	4.1
제주	0.4	0.1
계	100	100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

- 지방세 등의 감소 비중만 고려한 배분방식은 적용상 한계를 나타냄
  - 경기도의 배정비율은 기존과 큰 차이 없음
  - 자료 등의 한계로 배정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발생

□ 3안 : 면적 및 지방세 고려

- 면적과 지방세 또는 군속인원을 동일한 비중으로 고려하면 최대 62.7%의 경기도 배정비율 산정이 가능함

- 경기도 등은 면적과 지방세를 고려한 대안보다 면적과 군속인원을 고려한 대안이 높은 배정비율을 나타냄
- 면적비중을 높일수록 군속, 지방세 비율 낮출수록 배정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음

<표 5> 면적과 지방세 등에 따른 경기도 배정비율(%)

대안	a				b				c				d				e			
	A+1	B+1	A+2	B+2	A+1	B+1	A+2	B+2	A+1	B+1	A+2	B+2	A+1	B+1	A+2	B+2	A+1	B+1	A+2	B+2
경기	53.6	55.0	54.2	55.6	55.1	56.8	55.7	57.2	56.6	58.6	57.2	59.2	58.1	60.3	58.7	60.9	59.6	62.1	60.2	62.7

A+1, B+1 : 면적 + 지방세

A+2, B+2 : 면적 + 군속

#### IV. 향후 추진방향

-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의 가중비율을 8:2로 차등하며 계속공여 구역과 반환공여구역 간에도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면적기준에 대한 개선안은 방법론적으로 중앙정부 방식과 큰 차이가 없으며 법 취지에 보다 적합한 방식으로 기존보다 높은 경기도 배정비율 가능
  - 면적과 지방세 등을 감안한 개선안은 지역의 피해정도를 고려하는 장점은 있으나 경기도 배정비율 향상효과는 면적조정 개선안 보다 크지 않음
- 경기도 발전종합계획(안)에 대한 중앙정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의 적극적 추진 요구
  - 중앙정부의 예산배분방식에 대한 문제점 및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차별성 강조 필요
  - 관련부처사업이 아닌 행정안전부 지원 사업에 대한 확정 및 예산지원 조속 추진 요구



## 부록

### □ 면적기준 개선안에 따른 시도별 배정비율 (%)

시도	대안										
	a		b		c		d		e		
	A	B	A	B	A	B	A	B	A	B	
전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기	54.7	57.5	57.7	61.1	60.7	64.6	63.8	68.2	66.8	71.8	
부산	0.6	0.6	0.7	0.6	0.7	0.6	0.7	0.6	0.7	0.6	
대구	4.4	2.6	3.3	2.8	3.6	3.0	3.8	3.2	4.1	3.4	
인천	0.3	0.3	0.3	0.3	0.2	0.3	0.2	0.2	0.2	0.2	
광주	0.8	0.6	0.9	0.7	1.1	0.8	1.2	1.0	1.4	1.1	
대전	0.5	0.5	0.4	0.4	0.3	0.3	0.3	0.3	0.2	0.2	
강원	13.2	13.3	10.7	10.8	8.2	8.3	5.7	5.8	3.2	3.3	
충북	0.3	0.3	0.3	0.3	0.2	0.2	0.2	0.1	0.1	0.1	
충남	1.3	1.3	1.1	1.1	0.8	0.8	0.6	0.6	0.3	0.3	
전북	6.9	5.6	8.1	6.5	9.3	7.5	10.4	8.4	11.6	9.3	
경북	11.5	11.2	10.0	9.5	8.4	7.9	6.9	6.3	5.3	4.7	
경남	5.6	5.0	5.7	5.0	5.7	4.9	5.8	4.8	5.8	4.8	
제주	1.2	1.2	1.0	1.0	0.7	0.7	0.5	0.5	0.2	0.3	

### □ 면적과 지방세 등에 따른 시도별 배정비율 (%)

시도 별	a				b				c				d				e			
	A+1	B+1	A+2	B+2	A+1	B+1	A+2	B+2	A+1	B+1	A+2	B+2	A+1	B+1	A+2	B+2	A+1	B+1	A+2	B+2
전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기	53.6	55.0	54.2	55.6	55.1	56.8	55.7	57.2	56.6	58.6	57.2	59.2	58.1	60.3	58.7	60.9	59.6	62.1	60.2	62.7
부산	1.4	1.4	3.6	3.5	1.4	1.4	3.6	3.6	1.4	1.4	3.6	3.6	1.4	1.4	3.6	3.6	1.5	1.4	3.6	3.6
대구	10.0	9.1	9.2	8.3	9.4	9.2	8.6	8.7	9.5	9.3	8.7	8.5	9.7	9.3	8.9	8.5	9.8	9.4	9.0	8.6
인천	0.4	0.4	1.0	1.0	0.4	0.4	1.0	1.0	0.4	0.4	1.0	1.0	0.4	0.4	1.0	1.0	0.4	0.4	1.0	1.0
광주	0.5	0.4	0.5	0.4	0.5	0.4	0.5	0.6	0.6	0.5	0.6	0.5	0.7	0.5	0.7	0.5	0.7	0.6	0.7	0.6
대전	0.3	0.2	0.3	0.2	0.2	0.2	0.2	0.2	0.2	0.2	0.2	0.2	0.1	0.1	0.1	0.1	0.1	0.1	0.1	0.1
강원	8.8	8.8	16.6	16.6	7.5	7.5	15.3	14.0	6.2	6.3	14.0	14.1	5.0	5.1	12.8	12.9	3.7	3.8	11.5	11.6
충북	0.2	0.2	0.2	0.2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0	0.0	0.0	0.0
충남	0.7	0.7	0.7	0.7	0.5	0.5	0.5	0.4	0.4	0.4	0.4	0.4	0.3	0.3	0.3	0.3	0.2	0.1	0.2	0.1
전북	12.8	12.1	3.5	2.8	13.3	12.6	4.0	4.6	13.9	13.0	4.6	3.7	14.5	13.5	5.2	4.2	15.1	14.0	5.8	4.7
경북	8.7	8.5	5.8	5.6	7.9	7.7	5.0	4.2	7.1	6.9	4.2	4.0	6.3	6.0	3.4	3.1	5.6	5.2	2.7	2.3
경남	2.9	2.6	4.9	4.6	2.9	2.6	4.9	4.9	3.0	2.5	4.9	4.5	3.0	2.5	4.9	4.5	3.0	2.5	5.0	4.4
제주	0.8	0.8	0.7	0.6	0.7	0.7	0.5	0.4	0.6	0.6	0.4	0.4	0.4	0.4	0.3	0.3	0.3	0.3	0.2	0.2